

개정 근로기준법

오늘(`18. 2. 28.)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주요내용과 기업에서 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시간 주 52시간 전격 단축 등

주요내용

1주 근로시간 52시간

현행	평일 40	평일연장 12	휴일 16
개정	평일 40	연장 12	

1주일 40시간+ (휴일근로 포함) 1주일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

1주 최대 52시간

제2조(정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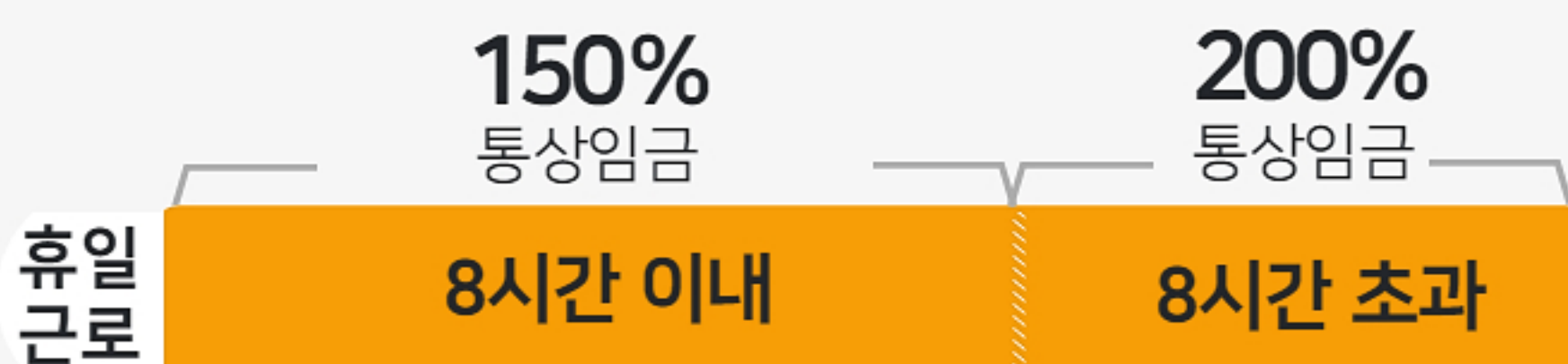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

적용시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실시

공공기관, 300↑	올해 7. 1.
50~299	2020. 1. 1.
5~49	2021. 7. 1.

| 30인 미만 사업장 | 2022. 12. 31.까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

휴일근로수당 현행유지



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①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
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

③ 사용자는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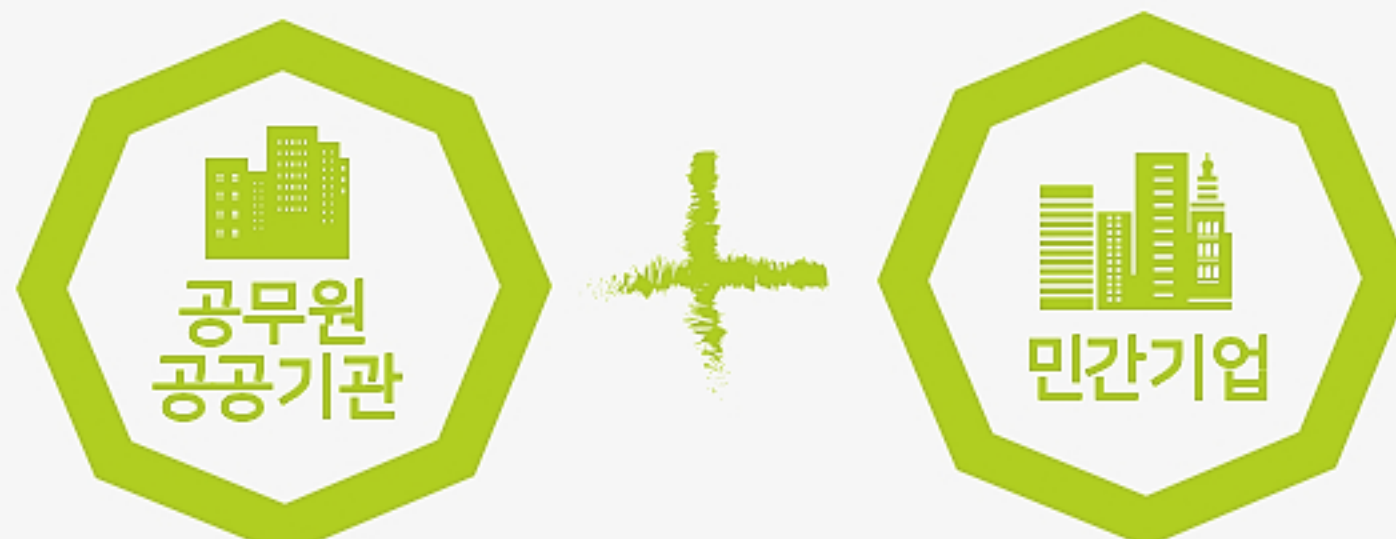
연장근로

휴일근로

야간근로

공포 후 즉시 시행

공휴일 유급휴일 민간확대



제55조(휴일)

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칙 제4조 (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)
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.

적용시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실시

5~29	2022. 1. 1.
30~299	2021. 1. 1.
300 이상	2020. 1. 1.

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

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→ 5개로 축소

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

보관·창고업, 자동차 부품판매업,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우편업, 교육서비스업, 연구개발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광고업, 숙박업, 음식점 및 주점업, 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, 미용·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,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(다만,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), 수상운송업, 항공운수업,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방송업, 전기통신업, 보건업,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, 사회복지서비스업

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특례적용 제외. 추가 연장근로 불가



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

현황분석 (인원, 생산량, 총근로시간, 근무조, 연차사용률, 설비 등 변화 분석)

정원 적정성 진단 (직무조사 → 직무수행 시간 분석 → 직무정원 확정)

근무형태 및 고용형태 진단 및 개선



지평 노동팀 담당변호사



이광선 변호사



김하영 변호사

지평 노동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객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광선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TEL 02-6200-1787 EMAIL kslee@jipyong.com